

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신고시기	A:본신고[] B:사전신고[]	신고번호	신고일 년 월 일
		처리기간	서류검사 3일, 정밀검사 18일

신고사료 구분	단미사료 [] 배합사료 (양축용 [], 반려동물용 유기 95% [], 반려동물용 유기 70%[])
---------	---

신고인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 호	업 종
	주 소	전화번호: (FAX:)

제조업자	제조업등록번호	대표자
	상 호	업 종
	주 소	전화번호: (FAX:)

신	사료의 명칭		성분등록번호
	신고 총중량/총금액 kg/ US\$		HSK번호
	제품명(영문명)		용도 및 형태
	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		
고	유통기한 년 월 일(제조일)부터 년 월 일까지		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
	생산국(제조국)		수출국
	제조회사명		주소
내	수출회사명		주소
	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	선적항	선적일
		도착항	도착(예정)일
용	보관창고 (전화번호:)	화물관리번호	선하증권(B/L)번호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인증서 사본 2.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 3.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.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